

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

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59-1번지 일원 ‘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’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9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1월 7일

포항시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사업종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- 사업명칭 :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법인명 :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- 소재지 :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1-29번지
- 대표자 : 이수동 (주소 :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1-29번지)

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59-1번지 일원
- 면 적 : 7,786.4㎡

4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예정일 : 2017년 10월
- 준공예정일 : 2020년 9월

5. 대행개시결정일 : 2017년 11월 7일

6. 사업대행자

- 사업대행자 : 코리아신탁(주) 대표 최익종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(대치동, 해성2빌딩 10층)

7. 대행사항

- 1)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
- 2) 설계,감리자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변경 또는 기존 용역계약 변경
- 3)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업무지원
- 4)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지원
- 5)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
- 6) 조합사업비 및 신탁차입 자금의 집행 및 관리
- 7) 공사대금 지출 등 자금의 집행 및 관리
- 8) 준공인가
- 9) 이전고시
- 10) 기타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

8. 기타사항

-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산의 처분, 자금의 차입,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. 끝.